#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지방세법이 2013. 1. 1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의 용어변경 되는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함

나. 지방세법이 2013. 1. 1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일괄부과기준 금액변경 되는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용어변경(안 제14조)

나. 제목 및 내용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 변경(안 제15조)

다. 재산세(주택)분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변경(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13. 05. 06 ~ 05. 26) : 의견없음

마.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 (‘13. 05. 08) : 가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결과 제외

사.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3. 1.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용어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변경과 재산세 주택분의 7월에 일괄 부과 기준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인상된 사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일부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 등「성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관련법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폐지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1항제1호가 신설되어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12년 말까지 규정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 38조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조문정리(안 제3조)

나. 식품산업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리(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식품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13. 05. 06 ~ 05. 26) : 의견없음

마.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13. 05. 08) : 가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결과 제외

사.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3. 1. 1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일부개정되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12. 12. 31일 종료에서 2013, 12. 31로 감면 기한이 1년간 연장되어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과

○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인용된 상위법인 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16조 제1호가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성주읍 금산·학산리 일원이 성주2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경상북도 고시제2012-246호(2012.8.13))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성주군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 구 분 | 지 역 명 | 면 적(㎡) | 비 고 |
|---|---|---|---|
| 성주2일반산업단지 | 성주읍 금산리,<br>학산리 일부지역 | 955,880 | |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예고

○ 예고기간 : 2013. 3. 5. ~ 3. 25. (20일간)

○ 예고장소 : 군・읍면게시판, 군 공보 및 군청 홈페이지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참고자료**

**가. 성주2 일반산업단지 지정 현황**

○ 지역지정 : 2012. 8. 13(경상북도 고시 제2012-246호)

○ 위 치 : 성주읍 금산・학산리 일원

○ 면 적 : 955,880㎡

○ 개발기간 : 2012. 8 ~ 2015. 12. 31

○ 시 행 자 : 성주군수

## 5. 검토의견

○ 본 고시안은 성주읍 금산리, 학산리 일부지역 955,880㎡가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2012. 8. 13일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